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14.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보건행정과장)
- 발의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상정 및 의결: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 9. 14.)

## 2. 제안이유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면적, m <sup>2</sup> )	운영법인	비고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월성로 77(월성동) (달서건강복지관 3층)	시설규모: 450.97m <sup>2</sup> 주요시설: 운영실, 프로그램실, 취미 문화실, 멀티미디어실	대구정신병원	인원 18명

※ 운영비(운영지원 및 인건비): 725,020천원(국비:시비:구비, 5:2.5:2.5)

※ 사업비(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474,940천원(국비·기금:시비:구비, 5:2.5:2.5)

#### 나. 위탁개요

##### ○ 위탁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2024. 1. 1.~2026.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기존 수탁업체 적격심사 후 재계약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75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 4.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에 기여하는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3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8개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 총점 92.3점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성과가 탁월하며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쳐 75점 이상일 경우 현 수탁기관과 계약하고, 75점 미만일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새로이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탁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